

2018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0조 1,359억 5천 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조 4,313억 9천 6백만원 (13.7%)이 증가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17,704,559	20,135,955	2,431,396	13.7
시 세	17,096,474	17,096,474	-	-
세외 수입	경상적	57,101	57,101	-
	임시적	550,984	550,984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	2,431,396	2,431,396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예 산 액			비 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2,431,396	2,431,396	
순세계 잉여금		-	2,431,396	2,431,396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액)+(집행잔액)-(보조금집행잔액)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	2018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7,096,474	17,096,474	-	-
보 통 세	15,188,359	15,188,359	-	-
취 득 세	4,394,623	4,394,623	-	-
주 민 세	505,197	505,197	-	-
재 산 세	2,369,431	2,369,431	-	-
자 동 차 세	1,101,638	1,101,638	-	-
레 저 세	132,083	132,083	-	-
담 배 소 비 세	624,383	624,383	-	-
지 방 소 비 세	1,212,695	1,212,695	-	-
지 방 소 득 세	4,848,309	4,848,309	-	-
목 적 세	1,671,518	1,671,518	-	-
지역자원시설세	275,965	275,965	-	-
지 방 교 육 세	1,395,553	1,395,553	-	-
지 난 년 도 수 입	236,597	236,597	-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 예산	2018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세 외 수 입 (계)	608,085	3,039,48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57,101	57,101	-	-
공 유 재 산 임 대 료	11,225	11,225	-	-
기 타 사 용 료	1,102	1,102	-	-
증 지 수 입	699	699	-	-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39,267	39,267	-	-
기 타 이 자 수 입	4,808	4,808	-	-
입 시 적 세 외 수 입	550,984	550,984	-	-
국 유 재 산 매 각 수 입	514,961	514,961	-	-
과 징 금 및 과 태 료 등	1,106	1,106	-	-
기 타 수 입	33,861	33,861	-	-
채 납 처 분 수 입	2	2	-	-
시 도 비 반 환 수 입	39	39	-	-
그 외 수 입	33,820	33,820	-	-
시 금 고 출 연 금	30,000	30,000	-	-
법 인 카 드 캐쉬 백 적 립 금	541	541	-	-
사 유 재 산 위 탁 예 금 이 자 수 입	56	56	-	-
부 가 가 치 세 매 입 세 액 공 제 액	1,232	1,232	-	-
주 행 분 자 동 차 세 관 련 이 자 액 등	1,991	1,991	-	-
지 난 년 도 수 입	1,056	1,056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 예산	2018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	2,431,395	2,431,395	-
순 세 계 잉 여 금	-	2,431,395	2,431,395	-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4,529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3,222억 9천 2백만원 대비 5.6% 증액(1,307억 5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2,322,292	2,452,997	130,705	5.6	
행정 관리	소 계	828,719	831,453	2,734	0.3
	행정운영경비	712,638	712,638	0	-
	재무활동	0	0	0	-
	사업비	116,081	118,815	2,734	2.4
교 부 금	1,493,573	1,621,544	127,971	8.6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8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7.30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1,491,068	1,491,425	1,621,773	130,705	8.8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539	1,896	4,273	2,734	177.6
재정보전금	1,128,175	1,128,175	1,197,593	69,418	6.2
시세 징수교부금	361,354	361,354	419,907	58,553	16.2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초과세입금 발생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조 4,313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	구분	예산액			비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	2,431,396	2,431,396	
순세계잉여금		-	2,431,396	2,431,396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액)+(집행잔액)-(보조금집행잔액)

- 2017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세입은 24조 7,471억원, 세출은 22조 77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은 2조 6,695억원이며, 이월사업비(2,076억원)와 국고보조금사용잔액(305억원)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4,314억원으로 전년(2조 588억원) 대비 3,726억원이 증가(18.1%)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됨(서울 특별시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세입측면)

(단위 : 억원)

순세계 잉여금 = ㉠-㉡-㉢	결산상잉여금 (세입-세출) ㉠	이월 사업비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24,314	26,695	2,076	305

(세출측면)

(단위 : 억원)

순세계 잉여금 = ㉠+㉡-㉢	초과 세입금※ ㉠	세출예산 집행잔액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24,314	19,284	5,335	305

※초과세입금(19,284억원)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247,471억원) - 예산현액(228,187억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A)+(B)-(C)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보조금 집행잔액 (C)
	금액	증가율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33,506	30,505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68,980	30,409
‘16년 편성	1,688,784	-	1,268,884	450,997	31,096

- 현재 서울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있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예산의 적기 편성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겠음.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과소추계로 인한 과다한 초과세입의 경우는 해당 초과세입 규모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대 시민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임.
- 또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지방재정법」(제7조) 및 「지방자치법」(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예산운용사항이라고 할 것임.
- 특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2조 313억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과소추계로 인한 초과세입금(1조 9,284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5,335억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1%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이 발생한바, 향후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세입예산편성과 함께, 면밀한 산출기초 조사와 소요 예산 분석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일반회계 집행잔액(5,335) 중 ‘17년 예비비 집행잔액이 1,695억원으로 31.8%를 차지함.

<2017회계연도 시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비율 (B/A)
합 계	319,819	329,162	352,459	23,297	107.1
일 반 회 계	225,725	228,187	247,471	19,284	108.5
시 세	155,554	155,554	178,171	22,617	114.5
세 외 수 입	11,621	11,621	8,553	-3,068	73.6
지 방 교 부 세	1,508	1,508	1,574	66	104.4
보 조 금	32,575	32,575	32,225	-350	98.9
보 전 수 입 등	24,467	26,929	26,948	19	100.1
특 별 회 계	94,094	100,975	104,988	4,013	104.0
공 기 업	7,900	8,182	8,528	346	104.2
기 타	86,194	92,793	96,460	3,667	104.0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2,734백만원)”, “재정보전금(69,418백만원)”, 시세 징수교부금(58,553백만원) 등 3개 사업에 1,307억 5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추경(안)	증감	증가율
합 계	1,491,068	1,621,773	130,705	8.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539	4,273	2,734	177.6
연금지급금(307-07)	686	3,419	2,734	398.5
재정보전금	1,128,175	1,197,593	69,418	6.2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308-05)	1,128,175	1,197,593	69,418	6.2
시세 징수교부금	361,354	419,907	58,553	16.2
징수교부금(308-02)	361,354	419,907	58,553	16.2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연금지급금)

○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현재 교통지도·단속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00여명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여 27억원의 퇴직금 예산을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에 편입되어 기존 공무원 출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금 수급이 일시 정지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시행(2018. 9. 21.)

〈 연금지급금 추가 요청 부서별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 〉

(2018.7.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기타 실·국
요청 인원	306	265	18	12	11
요청 금액	2,733,457	2,446,777	102,188	104,322	80,170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수	488	311	87	90	(임기만료에 따 른 당연퇴직)

※ 부서별 요청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수요조사('18. 6월~7월, 2회)를 통해 부서별 퇴직 희망(예상) 인원 및 퇴직금 요구액 조사

○ '연금지급금(307-07)'은 관계 법령¹⁾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현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한편, 재무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수요에 충당 하고자 예비비 3억 5천 7백만원을 지출결정(2018.7.23.)하여 집행하고 있음.

〈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금회사용액		승인후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기획조정 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168,643,444	-	356,501	168,286,943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민간이전 (307)	연금지급금 (307-07)	686,000	356,501	-	1,042,501

※ 예비비 사용승인 알림 (예산담당관-7867, 2018.7.23.)

1)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²⁾」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³⁾」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회 보고의 건은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은 공통으로 소요되는 행정물품의 수급 및 반납물품 처분, 재활용 등 물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인건비성 경비인 연금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기타직보수(101-02)’로 계상하고 있으나, 기타직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연금지급금(307-07)’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운영하거나 행정국의 “부조급여 지급” 사업의 ‘연금지급금(307-07)’에 계상 및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기준의 개정 및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에 개선 노력이 요망 된다고 하겠음.

※ 일반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101-01)과 기타교육직 퇴직금(101-02) 및 공무직 퇴직금(101-03)은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편성하고 있음(재무국 예산서 10~16p)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5년 4월 7일 시행, 대통령령 제 26183호, 2015년 4월 7일 일부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조례상 보고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나.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 및 제27조)에 근거⁴⁾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4) - 「지방세 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교부액	1,077,375	982,902	933,536	906,538	889,490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임.

※ 「지방세법」 부칙(2000.12.29.개정) 제8조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보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교부액	33,280	33,980	34,480	35,160	36,340

-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자치구 세입(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공동재산세 전출금 추가 정산분 694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추경(안)	증감	증가율
재정보전금	1,128,175	1,197,593	69,418	6.2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308-05)	1,128,175	1,197,593	69,418	6.2

-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다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공시가격 × 60% • 토 지 : 공시지가 × 70% • 건 물 : 지자체장결정가액 × 70%

-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 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과다하게 발생(도봉구(516억원) 대비 강남(2,402억원) 4.5배)하고 있는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재정보전금 제도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실적 > (결산액 기준)

2015년도	○ 강남, 도봉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5.9배(강남 3,702억, 도봉 233억)에서 4.5배(강남 2,228억, 도봉 494억)로 완화
2016년도	○ 강남,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5배(강남 4,001억, 강북 243억)에서 4.6배(강남 2,000억, 도봉 527억)로 완화
2017년도	○ 강남, 도봉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7배(강남 4,289억, 도봉 257억)에서 4.6배(강남 2,577억, 도봉 561억)로 완화

< 2017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격차 완화 효과, 도봉구 기준 >

- 2017년 결산액 기준, 도봉구 기준 -

(단위 : 억원 / 배)

구 분	2017년 당 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 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 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21,598	10,799	10,799	21,598	0	-	-
종로구	836	418	432	850	14	3.3	1.5
중 구	1,161	580	432	1,012	△149	4.5	1.8
용산구	916	458	432	890	△26	3.6	1.6
성동구	591	295	432	727	136	2.3	1.3
광진구	502	251	432	683	181	2.0	1.2
동대문	471	235	432	667	196	1.8	1.2
중랑구	313	156	432	588	275	1.2	1.0
성북구	475	237	432	669	194	1.8	1.2
강북구	257	129	432	561	304	1.0	1.0
도봉구	257	129	432	561	304	1.0	1.0
노원구	439	220	432	652	213	1.7	1.2
은평구	440	220	432	652	212	1.7	1.2
서대문	411	206	432	638	227	1.6	1.1
마포구	853	426	432	858	5	3.3	1.5
양천구	624	312	432	744	120	2.4	1.3
강서구	806	403	432	835	29	3.1	1.5
구로구	503	252	432	684	181	2.0	1.2
금천구	345	172	432	604	259	1.3	1.1
영등포	950	475	432	907	△43	3.7	1.6
동작구	505	253	432	685	180	2.0	1.2
관악구	454	227	432	659	205	1.8	1.2
서초구	2,478	1,239	432	1,671	△807	9.6	3.0
강남구	4,289	2,145	432	2,577	△1,712	16.7	4.6
송파구	1,989	994	432	1,426	△563	7.7	2.5
강동구	733	367	431	798	65	2.9	1.4

다. 시세징수교부금

-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⁵⁾(「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임.
 -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세입(2조 2,617억원) 중 7개 세목에 해당되는 초과 세입액(1조 9,517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지급분의 정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585억 5천 3백만원(58.553%)을 추가로 증액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7개 세목

〈 시세 징수교부금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추경(안)	증감	증가율
시세 징수교부금	361,354	419,907	58,553	16.2
징수교부금(308-02)	361,354	419,907	58,553	16.2

5)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 시세징수교부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지방세 세입 추계로 인한 초과 세입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무국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징수교부금	361,354	293,936	67,418	81.3%

※ 2018.6월분까지 집행 완료

- 또한, 현행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전수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드는 행정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징수액의 차이로 인하여 징수교부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건수 비율 확대 등 징수교부금이 각 자치구의 노력에 상응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제272회(2017.2.21.)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김용석 위원) 건의한 사항임.

<시세징수교부금 자치구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계	266,928	100.0	295,448	100.0	346,794	100.0	377,989	100.0	293,936	100.0
종 로	10,648	4.0	10,986	3.7	12,859	3.7	13,342	3.5	11,633	4.0
중 구	15,680	5.9	18,906	6.4	19,942	5.8	21,496	5.7	18,594	6.3
용 산	8,978	3.4	9,194	3.1	10,888	3.1	12,849	3.4	10,398	3.5
성 동	7,586	2.8	8,179	2.8	9,620	2.8	11,758	3.1	9,069	3.1
광 진	6,570	2.5	7,532	2.5	8,915	2.6	9,628	2.5	7,684	2.6
동대문	7,305	2.7	7,654	2.6	8,993	2.6	9,645	2.6	7,346	2.5
중 랑	6,497	2.4	7,063	2.4	8,462	2.4	8,985	2.4	6,429	2.2
성 북	7,740	2.9	8,400	2.8	10,161	2.9	10,804	2.9	7,915	2.7
강 북	5,000	1.9	5,363	1.8	6,356	1.8	6,668	1.8	4,777	1.6
도 봉	5,423	2.0	6,042	2.0	7,069	2.0	7,471	2.0	5,196	1.8
노 원	8,568	3.2	9,258	3.1	11,470	3.3	11,747	3.1	8,214	2.8
은 평	7,489	2.8	8,596	2.9	10,152	2.9	11,300	3.0	7,882	2.7
서대문	6,147	2.3	6,438	2.2	8,482	2.4	8,540	2.3	6,183	2.1
마 포	11,134	4.2	12,662	4.3	14,449	4.2	15,249	4.0	12,090	4.1
양 천	9,071	3.4	9,696	3.3	11,803	3.4	12,365	3.3	8,953	3.0
강 서	12,176	4.6	12,966	4.4	15,620	4.5	19,103	5.1	13,910	4.7
구 로	9,655	3.6	10,249	3.5	11,436	3.3	13,288	3.5	10,386	3.5
금 천	7,103	2.7	7,331	2.5	8,538	2.5	9,594	2.5	8,247	2.8
영등포	15,700	5.9	18,212	6.2	20,194	5.8	21,679	5.7	18,659	6.3
동 작	7,026	2.6	7,657	2.6	9,795	2.8	10,400	2.8	7,555	2.6
관 악	7,845	2.9	8,769	3.0	10,511	3.0	11,127	2.9	8,222	2.8
서 초	21,704	8.1	22,820	7.7	27,607	8.0	30,947	8.2	23,771	8.1
강 남	35,165	13.2	42,898	14.5	48,017	13.8	48,716	12.9	41,273	14.0
송 파	17,836	6.7	18,811	6.4	24,021	6.9	27,712	7.3	20,406	6.9
강 동	8,882	3.3	9,766	3.3	11,434	3.3	13,577	3.6	9,144	3.1

※ 구청별 산출액이 아닌 실제 집행한 내역임.

라.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 재무국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부실하고 전례답습적인 세입추계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종합적인 세입분석과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4년간 재무국 추경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집행액
2015	세무과	징수교부금	295,448	288,588	6,859	295,448
2016	세제과	법정출연금	1,636	0	1,636	1,636
	세무과	징수교부금	346,794	301,342	45,453	346,794
	세무과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473	317	156	473
	자산과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	195,879	64,879	131,000	195,953
2017	세제과	재정보전금	1,110,656	1,054,832	55,823	1,110,656
	세무과	징수교부금	377,990	325,071	52,918	377,990
2018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4,273	1,896	2,734	-
	세제과	재정보전금	1,110,656	1,054,832	55,823	-
	세무과	징수교부금	377,990	325,071	52,918	-

마.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7월 31일 기준 집행실적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34건 중 13건에 달함.

-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바, 과도한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실소요 예산의 파악을 통해 감액 추경을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무국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세출예산의 적기 투입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 현황>

(기준 : 2018.7.31.,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7월말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률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62	245	123	140	53.3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3,810	1,697	1,598	2,211	58.0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25	401	201	225	52.9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6	17	17	19	52.6
재정보전금	1,128,175	85,608	85,608	1,042,567	92.4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14	314	314	500	61.4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82	27	27	155	85.2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	37	37	93	71.8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77	1,496	704	873	55.4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19	778	377	442	54.0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19	961	961	1,259	56.7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5,101	2,125	2,125	2,975	58.3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88	129	129	159	55.3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